

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 게시일자 : 2021-09-06

광 주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 2021고단1919 저작권법위반
피 고 인 A
검 사 유지연(기소), 전종현(공판)
판 결 선 고 2021. 7. 22.

주 문

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.

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이 유

범 죄 사 실

누구든지 저작재산권,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·공연·공중송신·전시·배포·대여·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피고인은 2019. 11. 14.부터 2020. 9. 18.까지 총 7회에 걸쳐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이용하는 컴퓨터에 C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인 'D'를 무단으로 복제한 후 사용하여 위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.



증거의 요지

1. 피고인의 법정진술

1.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

1. 고소장

1. 피고소인의 고소인 서버 접속기록

1. 현장사진

법령의 적용

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

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, 벌금형 선택

1. 노역장유치

형법 제70조 제1항, 제69조 제2항

1. 가납명령

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

양형의 이유

피고인의 범죄전력,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, 범행 경위,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, 피고인의 가족관계, 건강상태,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.

판사 황혜민 _____